

충남 인권 심포지엄

인권으로 행복한 삶

- 지역사회와 인권 -



일시 2014. 12. 16 (화) 14:00

장소 덕산리솜스파캐슬 제라늄 (테마동 2층)

주최·주관 충청남도, 충청남도도민인권증진위원회
충남발전연구원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12월을 맞아 우리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눈처럼 우리 지역이 더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인권을 말하고자 합니다. 인권?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지 않나요? 그러나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 관계문제 등은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인권문제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권은 가장 중요한 ‘행복’의 문제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 충남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순수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행복한 삶을 함께하기 위해 인권 선언문을 제정·선포하였으며,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사회의 인권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해주시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우주형
충남발전연구원장 강현수

●● 프로그램

13:40-13:50	[등록]
13:50-14:00	[개회식]
14:00-15:00	<p>[주제발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 인권정책의 의미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 2. 지역에서 인권의 의미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3. 충남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의미와 과제 이수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4. 기초지자체의 인권증진 사례: 수원시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15:00-15:50	<p>[종합토론]</p> <p>좌장 : 우주형 충남도민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p> <p>토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인덕 대전 인권사무소장 - 전진식 한겨레신문 기자 - 진경아 충남도민인권증진위원회 부위원장 - 성태규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 참석자
15:50-16:00	휴식
16:00-17:00	<p>[인권 토크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희정 충남도지사 -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 - 박래군 인권활동가(인권재단 사람)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사회)
17:00	[폐회]

☞ 목 차

1. 서울시 인권정책의 의미

문경란 | 서울시 인권위원장 / 1

2. 지역에서 인권의 의미

이상재 |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 23

3. 충남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의미와 과제

이수철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41

4. 기초지자체의 인권증진 사례: 수원시

박진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73

충남인권심포지엄
인권으로 행복한 삶 : 지역사회와 인권

서울시 인권정책의 의미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

서울시 인권정책의 의미

문 경 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2014. 12. 16

서울시의 인권도시 추진 배경

지방 정부의 책무성

-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책무성
 -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지자체도 그 책임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
- 인권친화적 시장의 선출
 - 인권변호사 출신의 시장, 거버넌스와 인권존중의 지향성
 - 후보시절(2011) ‘서울시민권리선언’ 발표 … 인권친화적 행정의 출발점 제시
- 도시 행정의 목표 변화
 -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의 빈곤과 차별의 심화
 - 공리주의적 정책 추구에서 소수자와 약자 보호 및 차별 시정으로

3

도시권의 등장

- ‘도시인권’의 등장
 - 1) 68혁명과 ‘도시에 대한 권리’의 등장
 - 앙리 르페브르: “도시는 시민이 만드는 작품”, 도시를 만들 권리, 전유의 권리, 참여의 권리
 - 2) 세계화 시대의 이주자 증가와 시민권의 부재
 - 도시가 거주자 중심의 인권보장의 단위로서 부각
 - 3) 사회권과 도시에 대한 권리
 - 식수, 주거, 대중교통, 교육, 환경,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권보장에 효과적

도시는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생활 공간

4

도시권의 세계적 전개 과정



5

한국의 인권도시 운동



6

지자체 인권정책 추진 현황

인권도시구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규범	현장	광주, 충남도민 인권선언	서울 성북구 인권선언문
	조례	광주시 등 17개 시도 중 13개	부산 해운대구 등 총 227개 중 48개
	그 외 규범	서울시민권리선언,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 강령	울산 동구 인권도시 선언문
제도	인권 담당관	광주(국), 서울(과)	서울 성북구, 광주 동구
	인권위원회	광주, 서울, 울산, 대전, 충남	서울 성북구, 울산 동구, 수원 등 9곳
	인권보호관	서울, 광주	
	인권센터		광명시, 울산 동구
정책	인권기본계획	광주, 서울, 충남	부산해운대구 등 4곳 (서울 성북구 2014년 예정)
	인권영향평가		성북구 공공청사 신축 시 도입(2012)
	인권지표	광주	서울 성북구
	공무원인권교육	서울, 광주	경기 광명시

< 한국인권재단, 2014. 12 >

7

서울시의 인권정책 운영체계

추진과정



9

인권규범

1. 인권기본조례 (2012. 9. 28)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 1. 13)
3.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2012. 11. 1)

서울시민권리선언

서울시 인권헌장

서울인권기본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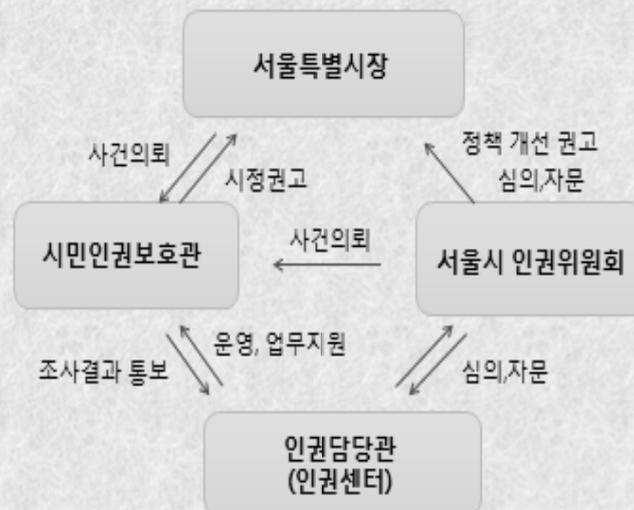
인권정책기본계획

10

기본조례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인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인권 보호 증진 노력 • 시민 참여 최대 보장 • 인권침해 시정 노력

제도



인권담당관 운영현황 (3팀14명)

인권정책팀

(6명)

- 인권조례 제정 등 법제도 개선
- 인권위원회 운영지원
-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시민인권 실태조사

인권보호팀

(3명)

- 시민인권보호관 지원
- 인권침해 접수 및 상담
- 인권침해 조사지원 및 시정조치 관리
-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인권협력팀

(4명)

- 공무원 등 인권교육 추진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 인권 매뉴얼 제작
- 국내외 인권단체 교류 및 협력

13

시민인권보호관

• 운영개요

- 구성 : 인권전문가 3명, 임기 2년
- 직무 : 인권침해 사항 조사 및 권고, 독립적 업무 수행

• 조사대상 범위

- 조사대상 : 인권센터 상담 접수 사항, 시장·위원회 조사의뢰 사항
- 조사범위 : 시, 자치구(시 위임 사무),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 조사현황

-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원 임용차별 등 21건 개선권고

14

인권위원회

- 설립 : 2012. 11. 27
- 위원 : 총 15명 (위촉 14명, 당연직 1명), 3년 임기
인권 전문성과 시민 대표성

< 수행업무 >

- 심의·자문
 -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 시장, 위원장,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회의 출석 요구 가능
-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인권침해 사항 조사 의뢰 가능
- 시 인권 정책에 대한 의견청취 가능
- 권고
 -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시장에게 개선권고 할 수 있음

15

인권위의 주요활동

❖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

- 정기회, 임시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 회의개최 실적 : 총43회
 - 12년도 : 2회 (정기회 1, 임시회 1)
 - 13년도 : 17회 (정기회 4, 임시회 8(워크숍 2), 소위원회 5)
 - 14년도 : 24회 (정기회 4, 임시회 6(워크숍 1), 소위원회 13, 워크숍 1회)

❖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자문

❖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자문

❖ 120다산콜 상담사 인권보호대책 마련 권고, 서울시민 인권헌장 관련 권고

❖ 인권헌장 제정 주도

❖ 인권포럼

❖ 월례 세미나

❖ 토론회

❖ 네트워크 구축 등

16

서울시 주요 인권정책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2013년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2013년 상반기 주요활동
- 목표 설정 및 73개 과제 선정, 세부사업 검토

비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정책 목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 지향적 도시 환경 조성	인권 가치 문화 확산	인권 제도 기반 구축	시민사회 참여체계 구축	
중점 과제	장애인	어르신	도시	공무원	인권영향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필수업무종으로의 배리어 프리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의 일상 관리 확대 올로 사는 어르신실 보살 장소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에게나 장애가 없는 도시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인권을 기반으로 배우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행정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이 참여하는 인권행정 운영 	
	여성	안전·차별 해소	이민·탈북민	수거	시민	기업영향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차별 피해 예방 의료진상권·사회서비스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아동·노년 인권보장 사회초상 학교밖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친수성 향상 인권 문화 조성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에 기업인 행정에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노년	노동	독거노년	공공·공익기관	공공·공익기관	공공·공익기관	공공·공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고용불안 없는 노동환경 조성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거노년 지원사업 공공·공익기관 문화·복지 시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공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공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공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공익기관 		

2) 공무원 인권교육

- 2013년 하반기 부터 실시
- 규모 : 2013년 - 1만2천명, 2014년 2만명
- 특징
 - 중점교육(4시간, 참여형)·일반 교육, 소규모 강의(50명 제한),
 - 인권전문가 (pool)구성,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 인권교육 전문가 연찬회, 포럼 운영(2014)

19

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

- 시민이 만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구성 (14. 8.6~12.31)
 - 시민위원, 124명, 전문가 40명
 - 위원장: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부위원장: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
- 총 6차례의 시민위원회 개최
 - 일반 시민 의견 듣는 2회의 토론회, 공청회, 인권콘서트
 - 인권시민사회 9개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약 40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 시민성과 전문성의 결합
- 헌장은 전문 및 6개 장의 총 50개조로 구성, 전문, 일반원칙(5개조), 참여와 소통(6개조), 안전과 건강(15개조), 환경과 문화(9개조), 더 나은 미래(6개조), 실천(9개조)
- 서울시의 헌장 선포 거부, 시민 주도의 낭독식 개최(2014. 12. 10)

20

4)서울시 인권위의 정책권고

1.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상황에 대해 서울시장에 첫 권고

- 전국 최초로 콜센터 감정노동-근로환경 등 6개 부문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권고
 - 폭언 및 성희롱에는 1회 경고 후 전화종결 등 인권침해 개선책 제시
 - 건강·안전 근로환경 마련 및 실태조사, 모성보호 법정휴가 사용 촉구
 - 국제기준 부합 '전자업무시스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이행
 - 민간위탁이 상담사의 인권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근원이므로 직접고용 등 고용구조 개선해 상담사의 노동인권 보장할 것 등
- 서울시장 권고 즉시 수용 및 권고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2. 서울시민 인권현장에 관한 권고

- 서울시민 인권현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인권현장 의결 및 확정을 인정하고 선포할 것
- 시민위원회 제6차 회의과정에 발생했던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 공청회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강구
- 서울시민 인권현장을 충실히 이행할 것

21

5)기타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 1) 이주민 대상 사법 통번역사 양성
 - 2) 돌봄 노동자의 건강과 직무실태에 대한 지침서 제작(2013)
 - 3) 신촌 연세로 보행권 회복 프로젝트(2014)
-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발간
-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 인권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
-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인권포럼 운영

22

6-1) 인권정책의 mainstreaming



23

6-1) 인권정책의 mainstreaming



24

서울시 인권정책의 의미

인권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권리담론의 힘!

: 시혜가 아니라 권리

⇒ 자력화(empowerment),

당당한 주권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

시민/ 행정의 주체/참여자/ 창작자/최종 책임자

단체장이 바뀌어도 인권이 제도와 규범적 가치로 정착



: 재량권이 아니라 의무

공무원은 행정의 코디네이터 또는 촉진자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 1.1

- 목표 : 인권정책의 실현과 내실화

- 가시성, 업적성 인권 행정 지양

1) 실행력을 담보한 '인권정책기본계획' 짜기

- 목표 :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정책 +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보행권 등)
- 입안 단계에서 개별부서와 인권위원과의 토론 및 소통
- 개별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
- 부실한 이행 모니터링

2) empowerment를 목표로 한 공무원 인권교육

- 시민의 인권 보장 의무자로서의 공무원, 노동자로서의 공무원, 시민으로서의 공무원
- 대형 집단 의무교육 탈피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연 1회 교육의 효과성(?), 의무 교육의 한계 뛰어넘기

27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 1.2

3) 인권침해 정책을 인권친화적 정책 및 현장으로 바꿔가기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인권적 분석과 비판, 전자감시·평가 방식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서울시가 고민해 오던 상담사 직고용에 대한 과감한 권고와 사회적 반향, 시의 전향적 수용

4) 은근한 기대와 인권의 불씨 살리기

- 중앙정부 차원의 인권 확대와 인권의 지방화
- 인권을 일상 생활 속에 녹여내기

28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 2.1

- 서울시민 인권헌장 파행을 통해 본 시민참여와 인권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는?
 - 50개 조항 중 45개 조항은 참석자 전원 일치로 통과, 5개조항은 대표토론을 거쳐 표결
 - 서울시, 전원합의방식 아니라며 "무산 선언"
 - 시민위원회 주체로 낭독식 개최
 - 정치 앞에서 제동걸린 인권행정 : 서울시, 사회적 합의 안됐다는 이유로 인권헌장 선포 거부했지만 성소수자 차별 여론 의식한 결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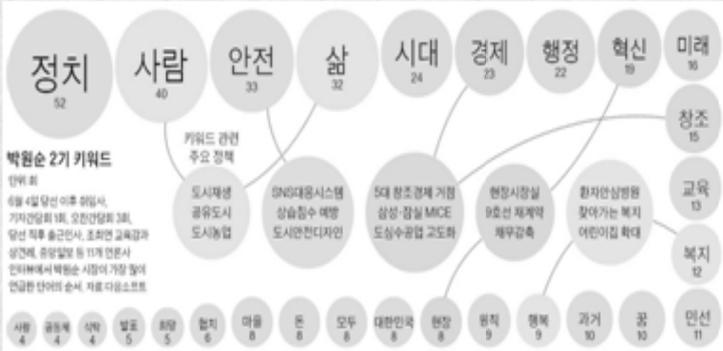


30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 2.2

- 시정목표에서 실종된 인권정책
- ➔ 인권을 인권이라 하지 않는 흥길동식(?) 인권 행정 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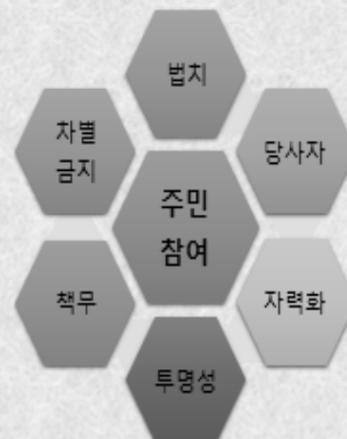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 2.3

- 자치단체의 미약한 인권 책무성
 - 책무로 인식하기 보다 단체장의 인권을 업적 수단으로 인식
- 행정편의적 거버넌스 ... '관행적' 인권행정으로 되돌아 갈 위험성
 - 인권위와 시민사회를 인권행정의 파트너로 인정, 취약한(vulnerable) 인권 거버넌스 구축
 - 시의 입맛에 맞지 않을 때는 일방적 결정, 시민사회의 도구화
 - 낮은 수준의 공무원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선입견,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부족한 인력
 - 준비 안된 공직사회, 역부족 시민사회

33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 2.4

- 가장 어려운 과제, 시민참여
 - 인권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 만으로는 한계
 - 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 가능성
 - 왜곡된 여론 배제 문제



인권정책의 7가지 원칙

34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 2.5

- 조례가 보장하는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위상의 한계
 -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기구, 비상임 위원, 위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의존
 - 업무의 비연속성, 역할의 쓸림, 위원회에 대한 위원 각자의 비중의 편차
 - 인권담당관의 위원회에 대한 지나친 의존, 과도한 업무 부담
 - 인권 관련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심의 한계
- 인권도시 서울? → ‘~ing’

35

인권도시를 향한 비전과 과제

'인권도시' 서울의 비전

- 인권도시 청사진 그리기
 - 내년 초 인권비전 수립 학술용역 발주 예정
- 시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기
 - 인권 mainstreaming 과 인권영향평가 도입
- 도시권의 수립 및 실현
 - 도시개발, 주거권 및 점유권, 보행권, 평등한 서비스 접근권 등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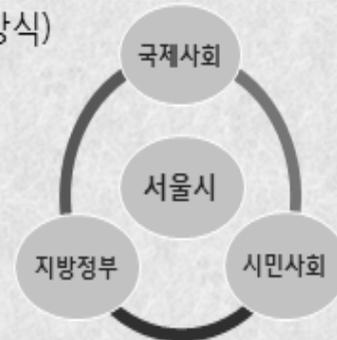
인권도시 서울의 과제 - 1

- 인권위원회의 역할 정립
 - watch dog? or good goverance?
 - 독립성 강화?
- 인권 레짐 재구성
 - 행정위원회 or 자문/심의기구
 - 합의제 인권위원회 or 독립제 옴부즈퍼슨 or 정책자문과 조사/구제의 통합
 - 사무국 설치와 상임위원 제도
 - 서울시 독립기구 or 의회 설치
 - 인권센터 or 인권재단

38

인권도시 서울의 과제 - 2

- 인권관련 교육 통합 및 운영체계 정비
 - 인권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 인권교육, 인권과 복지 교육 등
- 공동체에 기반한 인권도시 만들기 (시민참여의 방식)
- 국제사회, 타 지방정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



39

감사합니다

충남인권심포지엄

인권으로 행복한 삶 : 지역사회와 인권

지역에서 인권의 의미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지역에서 인권의 의미

이 상 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1. 지역과 지역문제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지역’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전에서 ‘지역’이란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자연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일정하게 나는 지리적 공간”이라고 나온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전지역’, ‘서울지역’ ‘충청지역’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지역’이란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서울권을 제외한 타 권역을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전개될 논의가 이러한 의미를 따르게 된다면 ‘지역’보다는 ‘지방’의 정의가 사전적으로 오히려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서 말하는 ‘지방地方’의 정의는 ‘한 나라의 수도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용어에 대해서만 정리하자면 이 글은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혹은 지방의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 특히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주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역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주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문제, 지역차별문제에서,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이전에 이르기 까지 지방과 지역은 한국의 사회와 정치 전반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문제이자 화두였었다. 그렇다면 왜 지역과 지방은 여전히 그 뒤에 ‘문제’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붙고 있는 것일까?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례로 우리나라의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전 국토의 면적 99,720km² 중에서 수도권의 면적은 11,745km²으로 약 11.8%를 차지하는데 반해서 인구분포는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인구 5천1백30만 여 명 중에서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인구는 2천5백3십여 만 명으로 약 49.4%에 이른다.

이러한 인구 집중화 현상은 해방이후 계속되어온 현상으로 그에 따른 문제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사회문제도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 다수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기는 했지만 초기 평가는 반쪽짜리 이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여전히 행정의 중심은 서울이다.

행정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교육, 언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타 지역의 불만과 문제 지적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대한민국의 인구현황¹⁾

행정구역	2014년11월 총인구수
전국	51,314,683
서울특별시	10,112,156
부산광역시	3,522,643
대구광역시	2,493,857
인천광역시	2,900,996
광주광역시	1,478,204
대전광역시	1,534,041
울산광역시	1,166,229
세종특별자치시	148,151
경기도	12,348,078
강원도	1,542,604
충청북도	1,579,037
충청남도	2,060,971
전라북도	1,871,725
전라남도	1,902,916
경상북도	2,699,686
경상남도	3,347,317
제주특별자치도	606,072

이러한 현상은 무엇이든 서울에만 있으면 한국사회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낳고 있다. 지역의 TV나 라디오 방송광고는 서울의 ‘강남스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도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는 일부 풀뿌리 단체를 제외하고는 단체명 앞에 지역 명을 넣지 않는다. 전국의 시민사회 이슈를 전부다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같은 문제의식에서 경남도민일보 김주완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들 ‘서울지’ 특히 서울 패권주의를 기반으로 지역 신문시장을 싹쓸이해온 거대 신문들은 한사코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중략..... 심지어 나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이저 시민단체들의 속내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직접 상대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졌을 경우, 일일이 각 광역시 도와 시군구청을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인 단체로 행세하면서 백화점식 종합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는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반면 지역에 따라 자양한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가 늘어날 것이다.”²⁾

1)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 김주완, 『대한민국 지역신문 기자로 살아가기』, 2008

심각한 것은 수도권외의 지역민들 중에서 이러한 서울집중화현상을 당연시 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른바 ‘내부식민지’ 현상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중앙정부가 지역에 선심 쓰듯이 나눠주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다수의 지역이 서로 유치하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경쟁하며 중국에는 지역 간 심한 갈등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기 일쑤이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지역문제의 핵심 고리는 서울이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 국토의 90%에 걸쳐 주거하는 절반이 넘는 시민들보다 10%의 면적에 주거하는 절반이 되지 않는 시민들의 의사와 주장이 훨씬 더 잘 수용되는 구조가 현재까지 지역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다. 물론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역시 상당히 많다. 앞서 언급한 서울에 대한 내부식민지 현상에 기인한 지역 이슈와 엘리트의 서울로의 흡수, 지역연고주의, 토착세력의 부패, 지역 언론의 사유화현상, 개발중심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평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지역문제라는 측면에서 서울과 그 외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과 인권

‘모든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인권의 보편성은 시대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언제나 추구해야할 정당하고 옳은 명제일 것이다. 인권이 ‘지역’과 만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 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지역에 있건 차별 없이 헌법적 권리와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인권 침해가 벌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영역인 지역 단위에서도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헌법 120조 ②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로 되어있는데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무조항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방의 시민들이 수도권과 차별 없는 개발 비전과 인권정책들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지방이 가지는 소수자적인 위치와 정체성 때문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인권이 나눠질 수 없다는 불가분성을 지지하면서도 설명상의 편의를 위해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어서 지역의 인권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과 시민권, 그리고 언론

‘서울과 비교해서 타 지역의 자유권적인 기본권리가 더 보장받지 못 한다’는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에서 지역이라고 더 보장받지 못한다던가 하는 일은 아주 적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 이 문제는 지역 언론의 역할과 한계에서 오는 문제가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전과 충청지역을 예로 들자면 일주일에 서너 차례 정도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것이 지역 신문에서 기사화 되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더 큰 문제는 간혹 발생하는 자유권의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지역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신사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중요성이 적은 사진과 기사는 넘쳐나는데 비해 지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이 현재 지역 언론의 현주소이다.

밀양에서 735송전탑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경찰과 한전 측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비인권적인 다음과 같은 일들이 서울 한 복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그 반향과 대응이 과연 밀양의 그것과 같은 수준이었겠는가?

그때 또다시 현장에서는 주민과 경찰의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민이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이 있는데 경찰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왜 사람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느냐?"고 따졌습니다. 경찰지휘관은 "(포위된 분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감금도 아니고요, 방조하면 난로도 천막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경찰에 포위된 주민들이 걱정된 할머니는 작은 몸을 경찰들 다리 사이로 밀어 넣어 보지만 제지를 당합니다. 다시 경찰들 사이를 들여다보지만, 꼬부랑 할머니의 체격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급기야 화가 나셨는지 욕설을 하면서 "왜 못 들어가게 하는데, 들어가서 얼굴 보고 얘기만 하고 나오겠다는데 와 막노"라며 다시 큰소리를 치면서 흠까지 뿌려 보지만 결국 경찰에 떠밀려 나옵니다.³⁾

이렇듯 기본적인 자유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지역의 언론과 서울의 (자신들이 중앙지라고 하는) 언론들은 이 사건을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대전 충청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성기업의 노조탄압,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연속된 사망, 청양 강정리 폐기물처리장 반대 투쟁 등의 사건이 장기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주체의 힘이 서울보다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언론과 지역민의 무관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2013년 9월 법무부에서 추진한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 기습 이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은 불과 3일 만에 법무부가 이전을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절차적 정당성 위반에 있어서는 제주 강정의 해군기지 공사와 밀양 송전탑 설치에 비해 훨씬 가벼운 것이었는데도 수도권 도시지역 거주민의 집단적인 실행행사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이 쉽게 결

3) 김종술. 『1박2일 '돛자리 전쟁', 주민들이 이겼다』. 오마이뉴스 2014.01.29

정을 반복하였다는 데서 또 다른 지역 차별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겠다.

지역과 사회권- 또 하나의 내부 식민지

세계인권선언에서 사회권 조항을 다룬 항은 22조에서 27조까지로 시민권·자유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1948년의 시대적 상황이 가져온 한계라고 지적된다. 그러나 인권이 가진 진보성에 비추어 보건데 사회권은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조항에서부터 날로 그 중요성과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사회권 전문 성격을 띠고 있는 22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국가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나라가 조직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또한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형편에 맞추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잘 드러나지 않는 기본권과 자유권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서울과 지역의 차이는 확실하게 드러나 보인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매년 서울로 가서는 그 이후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패턴은 해방 아니 조선시대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형화된 모습이다. 지역에도 대학이 적지 않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고등학교의 기준은 서울에 있는 특정 대학에 얼마나 진학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내부 식민지’의 또 다른 형태일 것이다.

인재의 유출은 자연스럽게 경제와 문화에 대한 서울 종속성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대전의 경우 인구대비 대형마트의 비율이 전국 광역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모두 17개의 대형마트가 있어 인구 9만 명당 1개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14명당 1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대형마트는 지역에서 유통되는 자본을 흡수해서 서울로 넘기는 기능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즐겨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민이라는 데서 서울종속화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이다. 문화시설과 병원과 같은 필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서울에 비해 지역이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이다.

사실 수치상으로는 아래 <표 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병원 병상수가 타 지역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나와 있다.

〈표 2〉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⁴⁾

시도별	2008	2009	2010	2011
서울특별시	7.13	7.15	7.37	7.78
부산광역시	12.00	12.94	14.29	15.63
대구광역시	10.49	11.21	11.45	11.91
인천광역시	8.69	8.71	8.68	8.26
광주광역시	12.96	13.84	14.62	17.05
대전광역시	11.76	12.59	13.30	13.82
울산광역시	9.39	9.69	10.19	10.56
경기도	7.78	8.09	8.10	8.69
강원도	10.92	10.85	11.08	10.87
충청북도	10.19	10.56	10.92	11.85
충청남도	10.23	10.77	11.08	11.07
전라북도	12.70	13.72	14.90	16.03
전라남도	13.68	14.14	15.32	16.39
경상북도	11.70	11.83	12.40	13.77
경상남도	13.88	14.08	14.51	14.92
제주특별자치도	6.66	7.02	7.36	7.03

하지만 실제 이용자가 느끼는 병원에 대한 거리감은 수도권 외의 지역민이 느끼는 거리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에서는 병원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게 있지만 정작 3차 의료기관 정도의 큰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1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시 지역 보다는 군 지역에서, 젊은층 보다는 노인층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제적인 차이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더 고려해야 하겠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표 3〉 충남지역 노인 의료서비스 어려움에 대한 조사⁵⁾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5점 평균 (점)	
							부정적인 편	보통	긍정적인 편		
전 체	1328	2.48	14.08	47.89	31.48	4.07	16.56	47.89	35.55	3.21	
거주 지역	시 지역	926	3.24	16.41	48.38	29.05	2.92	19.65	48.38	31.97	3.12
	군 지역	402	0.75	8.71	46.77	37.06	6.72	9.46	46.77	43.78	3.40
성별	남성	661	2.87	13.77	50.08	29.20	4.08	16.64	50.08	33.28	3.18
	여성	667	2.10	14.39	45.73	33.73	4.05	16.49	45.73	37.78	3.23
연령	~29세	209	4.78	15.31	45.45	32.54	1.91	20.09	45.45	34.45	3.11
	30~65세	1001	2.20	14.59	50.25	29.17	3.80	16.79	50.25	32.97	3.18
	65세 이상	118	0.85	7.63	32.20	49.15	10.17	8.48	32.20	59.32	3.60

수도권과 비교하여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이는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수 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서울중심의 국가정책에 기인한 것과 함께 비례해서 지방의 존재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기만술도 큰 원인이다.

그런데 그간 중앙은 지방을 상대로 어떤 짓을 해왔던가? 국민 행복의 핵심이라 할 안전과 복지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중앙은 돈줄은 놓지 않고 틀어쥐면서 안전과 복지를 지방에 떠넘기는 잔꾀를 부렸다. 그것도 지방분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말이다. 이른바 ‘지방분권 사기극’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지방분권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돈이 많이 생기는 일은 지방분권을 결사반대하는 짓을 천연덕스럽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 사기극의 대표작이라 할 복지분권 사기극을 보자.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이란 미명 아래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순수 복지사업 67개를 몽땅 지방에 이양했다. 그 대신 지방에는 담배소비세가 중심이 된 ‘분권교부세’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게 기막힌 사기술이다. 이후 5년간 분권교부세 수입은 연평균 8.7% 증가한 반면, 복지비 지출은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연평균 18%씩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⁶⁾

지방은 서울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러 잠시 쉬러오는 곳이 다가 아니라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은 이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쉬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민 역시 말로만 지방분권과 평등한 발전을 외치는 데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역 인권을 위한 지역정치와 지역 지배구조의 개혁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인권의식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2013

6) 강준만. 『지방분권사기극』. 한겨레신문. 2014.10.20

3. 지역 인권조례를 통한 지역 인권의 발전

최근 몇 년 들어 지역 인권분야에서 가장 도드라진 변화는 각 지역마다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는 지역인권조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조례자체가 지닌 느슨한 집행력과 해당 지자체의 의지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유명무실해 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동안 인권 영역에 있어서는 별다른 반향이 없었던 지역에는 획기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제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각 지자체별로 포괄적인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며 두 번째 유형은 각 지역 차원에서 여성, 장애인, 이주민과 같은 인권 취약 집단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보행권이나 환경보호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형태이다.

첫 번째 유형의 포괄적 기본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전체를 인권친화적인 인권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형의 조례보다 즉각적인 반응과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상위 법률에 비해 강제성이 떨어지는 조례의 성격을 감안하면 자칫 선언적 의미 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내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권조례는 제정이 논의되는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제정 후에도 지역 자치단체 행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제정된 지역 자치단체들의 인권조례는 지역이 처한 조건과 환경의 상이함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외형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조항 역시 많이 눈에 띈다.

이들 조례에는 공통적으로 도민(시민)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고 이를 책임질 시장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와 시의 상황에 맞게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인권사업 추진을 위해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정비율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3년 12월 제정된 충청북도 인권조례의 경우 조례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인권센터에 제보·접수된 사항, 도지사·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사항뿐 아니라 도와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 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복지 시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는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인권센터를 두고 있지만 조사를 맡기는 등 실제 권한을 주는 것은 충청북도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역 차원의 인권 조례 제정의 두 번째 유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 집단을 위한 부문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의 특성상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이들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⁷⁾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을 필두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조례 역시 이 유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인권조례에 해당될 것이다.

최근 인권조례에 관해 지역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가진 당진시의 경우 급격한 도시 산업화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안산시와 같은 이주노동자 인권조례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권조례는 지역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례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인권조례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인권조례의 경우 인권기본계획이나 인권센터의 설치 등에 있어서 지역 시민사회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시에는 자칫 인권조례가 평범한 종이문서로 사장(死藏)되어 버리거나 현재 북한인권을 대하는 일부 보수단체의 활동과 같이 지역 행정부에 의해 인권조례의 본말이 전도되어 버리는 현상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인권 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이후 지역자치단체마다 인권조례가 다른 조례에 비해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다. 익히 알고 있듯이 조례는 상위법보다 규범력이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은 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인권조례가 지역 주민의 구체적 삶 속에서 지역의 인권 현안을 다각도로 반영하고 지역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인권 조례와 제정 이후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지역과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을 그대로 답습하여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인권조례를 왜 제정해야하는지, 우리 지역의 인권 현안은 무엇인지, 조례에 어떤 가치를 담을지, 어떤 권리들을 보호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지역민과 행정부, 의회간의 논의가 생략된 채 만들어진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를 실증하기라도 하듯 이미 인권조례를 제정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인권조례 제정이후 조례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지역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4년 9월 현재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17군데(세종특별시 포함) 가운데 13개 시, 도가 지역인권조례를 제정하여 76%의 제정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총 234군데 중에서 50개의 시군구에서 지역인권조례를 제정하여 21.4%의 제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7) 2007년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에서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법률·취업 상담과 응급구조 그리고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되었다.

〈표 4〉 광역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현황(2014.05.09 기준)

지역	조례명	제정 및 공포 연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07-05-15 (제정)
		2012-01-01 (2차 전부개정)
		2012-01-01 (공포)
	2013-04-01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3-09-01 (제정)
경상남도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2010-03-25 (제정 및 공포)
		2013-12-12 (일부개정)
전라북도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10-07-09 (제정 및 공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02-22 (제정 및 공포)
		2013-07-10 (일부개정)
		2014-03-19 (일부개정)
충청남도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2-05-10 (제정 및 공포)
전라남도	전라남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07-05 (제정 및 공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2012-09-10 (제정)
		2012-09-28 (공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0-11 (제정 및 공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2012-11-02 (제정)
		2013-07-10 (일부개정)
강원도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6-07 (제정)
경기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8-05 (제정)
경상북도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1-11 (제정)
충청북도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2-27 (제정)

〈표 5〉 기초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현황(2014.05.09 기준)

지역	조례명	제정 및 공포연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2010-11-22 (제정 및 공포)
		2013-10-01 (일부개정)
		2014-01-02 (전문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2010-12-15 (제정 및 공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2011-01-10 (제정 및 공포)
		2012-03-05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2011-05-06 (제정 및 공포)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2011-08-09 (제정)
		2011-09-22 (일부개정)
		2012-01-01 (공포)
	2012-03-13 (일부개정)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시행규칙	2012-12-06 (제정)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11-08 (제정 및 공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	2012-03-12 (제정 및 공포)
		2013-09-25 (일부개정)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조례	2012-07-02 (제정 및 공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2012-07-19 (제정 및 공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기본 조례	2012-08-10 (제정 및 공포)

지역	조례명	제정 및 공포년도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09-13 (제정 및 공포)
		2012-10-04 (공포)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09-27 (제정 및 공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2012-11-09 (제정 및 공포)
		2013-07-01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03 (제정)
		2013-03-04 (일부개정)
		2013-07-11 (일부개정)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17 (제정 및 공포)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21 (제정 및 공포)
		2013-07-12 (일부개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27 (제정)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28 (제정 및 공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28. (제정)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31 (제정 및 공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12-31 (제정)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1-02 (제정)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1-07 (제정 및 공포)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3-01-08 (제정 및 공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1-09 (제정 및 공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2-18 (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3-21 (제정)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3.27 (제정)
		2013.07.22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4-01 (제정)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4-01 (제정)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4-05 (제정)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4-08 (제정)
부산광역시 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4-09 (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2013-04-16 (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5-02 (제정)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3-05-20 (제정)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7-02 (제정)
		2013-12-20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7-12 (제정)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2013-07-31 (제정)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8-02 (제정)
강원도 영월군	영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9-17 (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9-17 (제정)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0-01 (제정)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3-10-30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1-08 (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2013-11-14 (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2-12 (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2-19 (제정)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2-24 (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03-20 (제정)

〈표 4〉과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충청지역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 충남, 충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충남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여, 천안, 서산의 세 군데 시군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대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제정비율이 높지만 실질적인 조례운영 측면에서 보면 광주와 서울, 최근에 인권센터를 개소한 강원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인권조례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이용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광주광역시에는 5.18민주화항쟁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 승화시키는 도시 이미지화 작업에 인권조례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실질적인 주민인권증진에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5.18 주간에는 국내외에 ‘인권도시’ 바람을 일으키며 인권교육, 각종 인권행사 등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시선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인권조례 실천을 위해 인권담당관제를 도입하여 15명의 직원들이 인권정책, 인권보호, 인권협력팀으로 나누어서 각종 인권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거대한 서울시 규모에는 아직 인권정책추진이 미약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시민인권보호관제,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 등의 인권정책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권현장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박원순 시장의 대응은 많은 인권활동가들의 실망을 불러 일으켰기에 계속해서 서울시의 인권정책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충청지역으로 시야를 좁혀보면 제일 먼저 인권조례를 제정한 충청남도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2012년 4월에 인권조례를 제정한 충청남도는 제정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그해 12월 인권증진위원회에서 인권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충청남도과 교환한 이후 1년 6개월여 동안 2015년부터 5년간 다뤄질 충남의 인권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회의와 워크숍, 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물인 충청남도 인권기본계획은 광역도 차원에서는 처음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이주민, 등의 지역 내 소수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 어민에 대한 실태조사도 같이 진행했다. 이는 충남지역에서 인권을 기준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지역을 조사한 첫 번째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며 2014년 10월에 발표한 충남인권선언문과 함께 지역인권에 대한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더디지만 의미 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 충청남도과 달리 대전시는 인권조례 관련 올해 인권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인권정책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

충청북도는 2013년 말 의원발의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사전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청회를 열고 의견교환을 하면서 조례의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단체를 결성하고 향후 지역인권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여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서울의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게 인권조례를 실천한다던지 인권을 행정의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4. 인권기준의 지역 사회를 위하여

인권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progressive)’ 특징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확장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불과 10~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사회에서 인권의제에 쉽게 진입하지 못했던 성소수자, 청소년, 다문화가정, 이주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현재는 인권의 장에서 아주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지역을 인권과 연관시켜서 논의하는 시도 역시 시간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역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도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을 위한 담론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논의과제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사회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 늘 가지고 있는 차별의 문제와 이에 조응하는 서울 집중화문제는 곧 인권의 문제와 직결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각종 권리의 문제와 소수자에 대한 정책 등은 지역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점점 더 배가 시켜왔다.

지역을 인권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인권단체, 지방정부와 같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이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인권교육 역시 아주 중요할 것이다. 지역민 자신들 한명 한명이 무엇이 인권의 영역이고 인권침해에 해당되는지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은 지역의 인권담론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분야이다. 지역의 인권을 이야기 하는 데는 복잡하고 어려운 외국의 최신 인권이론보다는 지역민의 시선을 쉽게 끌어들 수 있는 주제와 이야기 거리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인권의 역사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학살이 주는 교훈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돌이켜본다면 제주에서는 4·3항쟁, 광주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대전에서는 산내 보도연맹 학살사건, 충북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영동 노근리에서 있었던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등을 지역인권의 주제로 삼는 것이 보다 지역민에게는 생생한 인권현장으로 다가올 것이다.

나치에게서 많은 유대인을 구한 ‘오스카 싯들러’도 훌륭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영동군 용화면의 보도연맹원 30여명을 탈출시킨 경찰관 ‘이섭진’씨의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지역에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화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의 승전지를 알리는 현장 못지않게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지역의 사례를 발굴하고 프로그래밍화 시키는 역할은 지역의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유효하고 실질적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조례 그 자체에 얽매이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자력화를 통해 지역인권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상상력에게 모든 권력을!” 이란 구호는 68혁명 당시의 대표적인 구호였으나 지역의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과 연결된 인권담론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적용과 확산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상상력을 발휘해서 현재의

조건들을 감안한 다양한 지역인권 의제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새로운 지역을 건설하고 건물을 만들고 도로를 개설할 때의 기준도 인권이 중심이라면 장애인, 아동,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아가서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인권을 기준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한다면 통상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방식과 같은 폭력적인 형태의 반인권적인 지역 개발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인권은 변화하고 진보한다. 이러한 인권의 특징은 지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역별로 전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보수진영에서 빨갱이정책이란 비난까지 받았지만 현재에는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을 뿐 복지정책의 확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대폭 줄어든 상태이다.

지역 차원에서 인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려야 할 인권의 목록을 새로 만들고 기존의 내용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에서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권리 목록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앙정부에다 재정지원을 얼마 더 받아내는 수준의 지역정치가 아닌 인권을 기준으로 지역을 다시 봐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없었던 권리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권리목록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인권 앞에 놓인 실질적인 과제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준만. 『지역은 식민지다』 개마고원. 2008
-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2010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김주완. 『대한민국 지역신문 기자로 살아가기』. 2008
-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 조효제, 『인권을 찾아서』 한울, 2011.
- 조효제, 『인권의문법』, 후마니타스, 2007.
- 하승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충남인권심포지엄

인권으로 행복한 삶 : 지역사회와 인권

충남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의미와 과제

이수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보고순서

- 01. 계획의 개요 / 3
- 02. 기본구상 / 31
-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 38
- 04. 제도와 문화 조성 / 53

01

계획의 개요

- 01_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01_2 계획의 범위
- 01_3 계획수립의 주안점
- 01_4 계획수립체계
- 01_5 계획수립의 방법
- 01_6 계획수립 과정
- 01_7 계획수립의 경과

01. 계획의 개요



01_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배경

- ▶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
- ▶ 「제2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2~2016)」의 지역적 반영
- ▶ 민선5기, 6기 도정이념의 반영

◦ 계획의 목적

- ▶ 「인권 행복충만 충남」실현을 위한 인권증진
- ▶ 충남의 역사성을 반영한 인권의 보편적 가치 구현
- ▶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시군 인권 향상방안 제시

[4]

01. 계획의 개요



01_1 계획의 배경: 2013 충청남도 인권의식조사

- **충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 ▶ 충청도민의 인권의식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 마련
 - ▶ 충청도민의 인권욕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파악
 - ▶ 충청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개별 면접조사**
 - ▶ 만 19세 이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총 1328명
 - ▶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성, 연령, 인구 비례 표본 할당 후 무작위 층화표본 추출
 - ▶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값 등의 통계분석 실시

[5]

01. 계획의 개요



01_1 계획의 배경: 2013 충청남도 인권의식조사 내용

- **충남의 전반적 인권 의식 및 평가**
 - ▶ 전국/충남도의 인권의식 비교

- **충남도의 인권 침해와 차별**
 - ▶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각 계층의 인권존중 정도

-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 ▶ 일상생활, 경제활동, 사회복지, 교육, 사회참여 영역에서 인권 상황

- **충남의 인권 교육 및 행정**
 - ▶ 인권 교육의 경험 및 필요성, 교육프로그램 등
 - ▶ 충청남도 행정의 인권보장 정도 및 교류 필요 기관

- **인권 현안과 정책**
 - ▶ 자유권적/사회권적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
 - ▶ 향후 조사 시 비교 자료로 활용

[6]

01. 계획의 개요



01_1 계획의 배경: 2013 충청남도 인권의식조사 결과

분야	조사 요약	시사점
일반적 인권의식 전국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식 평가는 전국 < 충남 • 제도 준비는 전국 > 충남 • 3년 인권개선 전국 <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차원의 인권 증진 제도연구 • 제도의 실제 적용 가능성 탐색
인권 침해와 침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권적 인권 침해 심각 • 인권약자의 인권 침해 소지 • 침해 원인 경제적, 학력, 성별 등 •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양상으로 • 인권 침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의 다양한 원인, 계층,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 피해의 경도 선택하여 증진방안 마련 필요
인권 침해의 경우 대응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대응이 가장 일반적 • 당사자와의 직접 해결 방법 선호 • 향후에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지 부족보다 절차/방법 모둠 • 대응 방법 개발 및 교육 필요 • 교육과 홍보의 병행
인권취약계층 상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모두 자발 존재 • 자발은 일상, 경제, 복지, 사회참여 • 모든 영역에서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계층별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상황 조사 • 조사 내용을 종합 지역 차원의 인권증진 내용 도출

[7]

01. 계획의 개요



01_1 계획의 배경: 2013 충청남도 인권의식조사 결과

충남의 인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교육 경험은 낮음 • 교육의량과 필요성 긍정 • 교육 주체와 대상에 다양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대상, 주체, 상황에 맞는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충남의 인권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의 인권보장, 노력에 긍정적 • 제도정비, 거버넌스에 긍정적이나 많은 부정적 평가 •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도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차원의 행정적 요구 파악 • 제도 정비 방안 마련
기본계획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 지방정부-시민사회-타 시도-도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인권문화 조성과 인권교육 체계 정비 및 실행 방안 마련 	

[8]

01. 계획의 개요

01_1 계획의 배경- 타 시도 인권정책 분석

- 분석 대상 시도의 인권정책
 - ▶ 서울인권정책 1차 기본계획(2013)
 - ▶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2011)
 - ▶ 울산 동구 인권기본계획(2011)
 - ▶ 서울 성북구 인권기본계획(2013)
- 타 시도 인권정책 분석의 함의
 - ▶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인권정책
 - ▶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인권정책
 - ▶ 기존의 다른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한 인권정책
 - ▶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인권정책

[9]

01. 계획의 개요



01_1 계획의 배경- 인권정책의 방향성 설정

- 도민의 삶과 밀착된 인권정책
 - ▶ 행정중심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현장에 기초한 인권정책 수립
- 도민의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인권정책
 - ▶ 도민 누구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립
 - ▶ 기본권 보장이 상대적을 취약한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권정책
 - ▶ 선언적 정책이 아닌 도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권정책
-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인권정책
 - ▶ 복지정책 등 기존 정책을 인권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인권정책
 - ▶ 일회적 정책을 지양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인권정책

[10]

01. 계획의 개요



01_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 계획기간 : 2015~2019(5년간)
 - ▶ 기준년도 : 2012년
- **공간적 범위**
 - ▶ 충청남도 전역(15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 사회적 약자·소수자(장애인, 노인, 어린이·청소년, 여성, 이주민)인권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 ▶ 국내·외 인권행정 추진 사례조사,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구축 방안
 - ▶ 지역적 특수성 반영(농·어업인)
 - ▶ 「충남도민 인권선언문」 작성 및 선포식 개최 방안

[11]

01.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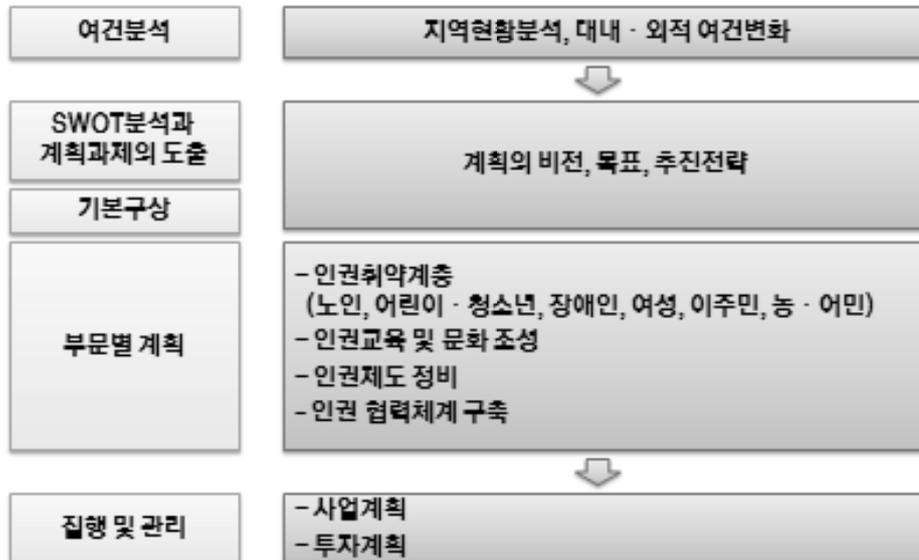
01_3 계획수립의 주안점

- **수립과정이 인권적인 참여적 인권 계획**
 - ▶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실태 조사, 사업발굴 과정의 참여계획
 - ▶ 외부전문가, 자문위원(인권증진위원), 주민의 참여계획
- **‘살아 있는’ 계획**
 - ▶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인권사업 제시
 - ▶ 관련실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권 T/F” 워크숍, 수시 협의
- **단계적 계획**
 - ▶ 분야별 인권항목·과제 결정 → 인권과제별 실태조사 및 문제점 도출 → 대안사업 발굴
 - ▶ 단계별 확인을 거쳐 절차의 정당성 확보
- **수립과정의 인권감수성 교육 병행**
 - ▶ 실태조사 등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인권교육 병행

[12]

01. 계획의 개요

01_4 계획의 수립체계



[13]

01. 계획의 개요

01_5 계획수립의 방법

◦ 주민, 전문가, 공무원의 참여적 계획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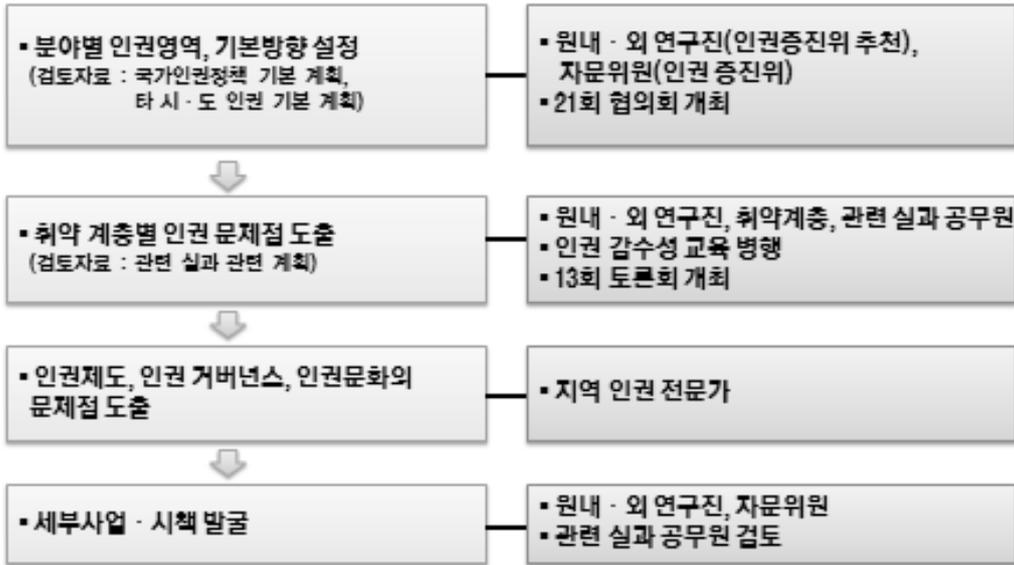


[14]

01. 계획의 개요



01_6 계획수립의 과정



[15]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과정

교육과 병행한 인권 워크숍 개최 후 방향 설정 후 진행

토론내용	조치사항
- 연구기간, 연구비 내에서 실태조사 방법 - 진술자들의 사례가 중요 - 분야별로 워크숍 구상 필요	- 분야별 외부연구진/자문위원 21회 협의회 개최 - 분야별 13회 토론회 개최
-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 고려	- 도청 인권T/F 워크숍을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을 선정
- 실태조사기회를 위한 별도 기구 마련	- 분야별로 원내·외 연구진, 자문위원을 구성
- 공청회를 많이 실시	- 충남을 도시형(아산), 농촌형(홍성) 2회 실시
-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 - 국가인권위 등에 문의하여 인권범위 설정	- 21회 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별 인권활동, 인권과제 발굴
- 분야별 인터뷰 대상 선정법, 자문 필요	- 협의회, 토론회 구상 시 인권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반영
- 실태조사 후, 의제 설정법, 토론 필요	- 인권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의제 설정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2회, 최종보고회, 최종보고 조치사항 회의 개최

[16]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 인권항목 및 과제 도출

- 사회적 약자별 실태조사를 위해 6개 취약층별로 인권항목 및 과제를 도출
- 취약층별 인권 전문가, 관계자와 21회 협의회를 개최



[17]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 인권항목 및 과제 도출(예시, 장애인 인권)

항목	세부항목
장애인 인권보장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 - 장애인복지전달체계 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인권침해·차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 장애인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
장애인권리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권보장, 건강권보장 - 소득보장(근로 및 고용), 최저생계비 - 장애인가족지원 - 장애아동 지원 - 고령장애인 지원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지원·활동지원 확대 - 시설내 인권보호 및 시설인권피해자 보호대책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확대

[18]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 취약계층별 인권교육 및 토론회

- 토론회를 통해 인권 세부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

■ 도시 결혼이주여성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 일시 : 2014.2.8 ; 아산 외국인노동자센터
- 인권강사 : 우삼열(아산 외국인노동자센터)



■ 도시 이주노동자(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 일시 : 2014.2.9 ; 아산 외국인노동자센터
- 인권강사 : 우삼열(아산 외국인노동자센터)



[19]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 아동·청소년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 일시 : 2014.2.14 ; 아산 광덕산 생태교육원
- 인권강사 : 유정은(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 농촌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 일시 : 2014.2.16 ; 홍성 이주민센터
- 인권강사 : 유요열(홍성 이주민센터)



[20]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 도시 이주노동자(베트남인)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 일시 : 2014.2.23 ; 아산 외국인노동자센터
 - 인권강사 : 우삼열(아산 외국인노동자센터)



-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 일시 : 2014.2.23 ; 아산 외국인노동자센터
 - 인권강사 : 우삼열(아산 외국인노동자센터)



[21]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 농민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 일시 : 2014.2.25 ; 충남도청 문예회관
 - 인권강사 : 박경철(충남발전연구원)



- 장애인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 일시 : 2014.2.26 ; 충남도청 회의실
 - 인권강사 : 박종균(나사렛대학교)



[22]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 노인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 일시 : 2014.2.27 ; 충남도청 문예회관
 - 인권강사 : 김원천(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 어민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 일시 : 2014.3.6 ; 태안군 수산발전협의회
 - 인권강사 : 김종화(충남발전연구원)



[23]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 여성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 일시 : 2014.3.10 ; 충남도청 회의실
 - 인권강사 : 조이여울(미디어 일다)



- 북한이탈주민 인권감수성 교육 및 토론회
 - 일시 : 2014.6.3 ;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
 - 인권강사 : 이동일(충남 통일교육관)



[24]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 인권제도, 인권 거버넌스, 인권교육·문화 토론회

◦ 일시 : 2014.7.30 ; 아산 순천향대학교



[25]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 인권정책 T/F 워크숍

◦ 일시 : 2014.6.24 ; 충남도청

◦ 참석자 : 충남도청 T/F 공무원, 연구진

◦ 협의내용

- ▶ 제시된 인권사업·시책(안)의 현실성, 실현가능성 검토
- ▶ 관련 실과별 중복사업 여부
- ▶ 인권사업·시책(안)의 수정·보완 사항
- ▶ 실과 관련업무가 아닌 경우, 해당부서 제시
- ▶ 반영할 신규사업에 대한 자원별(국·도비,기타), 연차별(2015~2019) 예산계획



[26]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 제1차 도민공청회

- 일시 : 2014.9.22 , 푸른아산 21 대회의실



[27]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 제2차 도민공청회

- 일시 : 2014.9.26 ; 충남도청 문예회관



[28]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 인권선언문 작성 경과

- 인권선언문 작성위원회 구성(2014.6)
 - ▶ 이상재, 이상선, 하승수, 권정안, 유은혜
- 인권선언문 초초안 작성 및 수정·보완(2014.7~)
- 인권선언문 도민참여단 구성(105인)(2014.7~)
- 인권선언문 초안 확정(2014.9)
 - ▶ Town Hall Meeting 개최



[29]

01. 계획의 개요



01_7 계획수립의 경과

- 인권선언문 확정(2014.9.30)
 - ▶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심의·의결



- 도민인권선언문 선포식 개최(2014.10.13)



[30]

02

기본구상

- 02_1 대내·외 여건변화
- 02_2 지역인권여건분석(SWOT)
- 02_3 계획과제
- 02_4 비전 및 목표
- 02_5 부문별 추진전략

02. 기본구상

02_1 대내·외 여건변화

대외적 여건변화

- 경제1993년 세계인권회의, 각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 2001년 UN CESCR, 우리 정부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작성 권고
- 1993년 호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 30여개국 수립

대내적 여건변화

- 해방 이후 권위주의정권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확보와 민주주의 쟁취 목표
-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상·양심의 문제, 신체의 자유 등 인권운동 영역 확대
- 2001년 인권운동의 성장,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 同위원회 설립 이후 사회취약층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32]

02. 기본구상



02_2 지역인권여건분석(SWOT)

강점

- 동화혁명, 3·1운동으로 평등, 연대 등 인권의 가치 경험
-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

약점

- 인권운동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의 사회 혼재
- 지방차원의 인권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

기회

- 인권에 관한 도민 인권감수성 향상
- 민선5기 민주적 가치가 도정의 핵심 지향점으로 설정

위협

- 지역에 외국인 이주자 등 인권 취약층 증가
- 비정규직 증가, 청년실업,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33]

02. 기본구상



02_3 계획과제

- **인권취약계층의 기본권, 평등권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이주민, 농·어민의 인권증진 방안 마련
-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인권친화적으로 행정제도 정비, 인권기관의 역할 제고
- **인권문화 조성확산**
 - ▶ 인권 교육제도와 프로그램을 정비
- **효율적 인권논의와 인권사업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

[34]

02. 기본구상



02_4 비전 및 목표

비전	모두가 행복한 인권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의 인간적 삶에 대한 권리 확보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 인권제도 정비 ▶ 인권교육 및 문화 조성 ▶ 인권 협력체계 구축

[35]

02. 기본구상



02_5 부문별 추진전략

부문	기본방향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노인	· 노인학대 · 기본적인 생활권리 보장
	아동청소년	· 시민적 권리와 자유 보장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기반 조성 · 장애 아동·청소년의 자립촉진과 생존·발달 보장 · 교육 및 문화적 활동 기반 마련 · 법적 분쟁 및 착취상황의 해소
	장애인	· 사회적 기반 구축 · 실질적 기본권 보장 ·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
	여성	· 차별금지 및 성평등 실현 기반 구축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 여성소수자정책 강화 · 여성의 실질적 경제참여권 보장
	이주민	·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 기본권 보장
	농업인	· 사회적 기반 구축 · 실질적 기본권 보장
	어업인	· 사회적 기반 구축 · 실질적 기본권 보장

[36]

02_5 부문별 추진전략

부문	기본방향
인권교육 및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공공과 시민영역의 균형 있는 인권교육 강화 ▪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확산
인권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부서 신설 ▪ 인권센터 설립
인권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의 인권담당 부서와 인권센터의 연계망 구축 ▪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 03_1 아동·청소년
- 03_2 장애인
- 03_3 노인
- 03_4 여성
- 03_5 이주민
- 03_6 농업인
- 03_7 어업인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03_1 아동·청소년- 실태

-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보장
-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아동·청소년의 장애 및 보건복지
-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여가문화
- 특별보호조치



[39]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03_1 아동·청소년-계획

- 충남아동청소년인권조례 제정
- 아동청소년인권 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인권 안내 및 홍보
-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
-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등 5개 사업
- 자살예방전문 강사단 양성 및 교육 실시
- 지역사회 요보호 아동 사례관리협의회 추진



[40]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03_2 장애인-실태

- 사회적 기반
 - ▶ 장애인 접근권(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의 제한
 - ▶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에서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未고려
 - ▶ 장애인복지전달체계 연계 미흡
 - ▶ 시민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 미흡한 장애인 인권교육
- 실질적 기본권 보장
 - ▶ 중증장애인의 심각한 주거권 침해
 - ▶ 위협받는 장애인의 건강권, 불충분한 교육권
 - ▶ 자립생활 지원, 장애여성 인권 침해
 - ▶ 인간적 삶(근로, 고용, 최소생계비 등)을 위협하는 저소득
 - ▶ 제한적인 문화·예술·체육·여가활동
 - ▶ 장애인가족의 가계운영, 개인생활 제약



[41]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03_2 장애인-계획

- 장애인 웹 접근성 확대
-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 장애인식 개선
-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
- 장애인 가족지원
- 장애여성 지원
- 문화 향유권 보장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42]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03_3 노인-실태

◦ 노인학대

- ▶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관심 부족
- ▶ 시설 종사자의 인권 문제
- ▶ 가족의 부양 부담 및 거부
- ▶ 장기요양제도의 문제



◦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 ▶ 제한적인 노인의 노동환경 및 권리
- ▶ 왜곡된 노인의 돌봄권리



[43]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03_3 노인-계획

- 노인장기요양기관 옴부즈맨제도 강화
-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빈곤해결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인일자리아업
- 노인의 여가 및 문화공간 리모델링사업
- 장기요양기관의 인권보장 지침 마련



[44]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03_4 여성

- 성차별금지 및 성평등 실현 기반
- 여성에 대한 폭력
- 여성소수자 정책 강화
- 여성의 경제참여권 보장



[45]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03_4 여성

- 양성평등인권교육 실시
- 성별분리통계 구축 · 생산
- 여성폭력 없는 충남만들기
 - > 마을단위 시스템 구축
- 미혼모부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 활동 기회 제공,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



[46]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03_5 이주민

-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 ▶ 입국 전 정보 제공 미흡
 - ▶ 입국 후 한국사회 적응 기본정보 제공·교육 부족
 - ▶ 생활문제 도움 공공, 민간 프로그램 부족
-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 ▶ 기본적인 생활환경 보장 미흡
 - ▶ 질병 치료의 어려움으로 건강권 침해
 - ▶ 이주민들의 체류 안정성 미흡
 - ▶ 기본적 노동권의 침해, 경제적 어려움
 - ▶ 언어폭력 등 폭력에의 노출, 인종차별



[47]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03_5 이주민

-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인권 차원의 상담 전문성 강화 외 4건
- 결혼 이주여성 인권 강화 사업
 - ▶ 다문화 가족 어울림 사업 외 6건
- 충남 서부지역 외국인노동자 보호단체 설립 지원
- 이주 외국인 대상 인권실태조사
-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인정(중앙정부 건의)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증진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활성화 외 8건



[48]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03_6 농업인-실태

- ▶ 농민·농촌·농업의 가치 인식 부족
- ▶ 표준적 삶을 누릴 보장체계 미흡
- ▶ 지역개발 및 환경오염에 대한 참여권 미흡
- ▶ 향토지식과 지역문화 퇴조
- ▶ 식량자급률 하락 및 토지소유권 약화
- ▶ 농림사업 관련 정보 전달체계 미흡
- ▶ 농산물가격 결정권에 대한 농민의 참여권 부족



[49]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03_6 농업인-계획

- 우리농 가치 홍보 확대(농정과, 시·군, 마을, 학교 협의)
 - ▶ 3농(농민, 농촌, 농업) 가치 홍보
- 소외지역 농촌주민 문화이용 확대(도, 시·군)
- 소외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도, 시·군)
- 풀뿌리 마을환경감시 강화(도, 시·군)
 - ▶ 현재 각 시군의 「실버환경감시관」제도를 적극 활용
- 농민인권 교육 및 상담



[50]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03_7 어업인

◦ 사회적 기반

- ▶ 제한적인 접근성(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
- ▶ 사법 및 행정절차상의 인권 침해
- ▶ 어촌주변 개발, 어업인간, 어업인과 타지인간 등 사회적 갈등
- ▶ 어업인 인권교육 전무

◦ 제한적인 실질적 기본권

- ▶ 제한된 주거권, 위협받는 건강권
- ▶ 부실한 교육환경, 부족한 자립생활지원·활동
- ▶ 낮은 소득(근로, 고용, 최소생계비 등)
- ▶ 부족한 문화·예술·체육·여가활동
- ▶ 제한적인 여성 어업인에 대한 교육
- ▶ 어촌의 환경오염 심각



[51]

03. 취약계층의 인권실태와 계획



03_7 어업인

◦ 어업인 인권교육 사업(인권센터)

- ▶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 외 어업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
- ▶ 어업인이 인권 물이해로 수산업 분야의 인권침해 발생 (예, 염전 근로자, 어선어업 근로자 등)
- ▶ 어업인 인권 외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 병행 실시



[52]

04

제도와 문화 조성

04_1 인권제도 정비

04_2 인권교육 및 문화 조성

04_3 인권 협력체계 구축

04. 제도와 문화 조성



04_1 인권제도 정비

- 충청남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 인권 관련 공익변호사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
- 인권실태조사
- 인권문화행사
 - 충청남도 인권 주간을 지정
- 인권보고서 발간
- 시민참여배심원제 도입
 - 인권증진위원회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시민참여배심원제를 운영
- 충청남도 인권센터 설치(인권조례 제17조)
 - 1안) 외부기관 위탁 방식
 - 2안) 도 자체 조직 운영 방식

[54]

04. 제도와 문화 조성



04_1 인권제도 정비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방식

◦ 1안) 외부기관 위탁 방식

▶ 팀 수준의 전담부서 설치시, 전문성을 지닌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

▪ 장점

- 도 인권전담부서를 팀 범위에서 인력, 조직 구성 가능
- 인권센터 사업추진 전문성 확보
-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적 시설 확보
- 해당사자간 신뢰성 확보

▪ 단점

- 사업추진의 책임성 한계
- 위탁비용 등 운영비 증가
- 도 공무원의 인권전문성 축적 한계
- 관련 기관 간 사업추진상의 갈등조정 미흡

[55]

04. 제도와 문화 조성



04_1 인권제도 정비

충청남도 인권센터 운영방식

◦ 2안) 도 자체 조직운영 방식

▶ 담당관 또는 과 수준에서 인권관련 정책 추진하는 방식

▪ 장점

- 인권정책의 실행력 확보
- 자체 사업추진을 통한 운영비 부담 저감
- 인권정책에 관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축적
- 대내외적으로 인권정책적 마케팅 효과

▪ 단점

-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전문성 부족
- 담당관 또는 과 단위 조직구성의 부담
- 인권관련 단체·개인들에 대한 상호교류 시설 부재
- 정책의 전문성 확보·성과를 위한 보완 인력충원 및 사업추진예산 필요

[56]

04. 제도와 문화 조성



04_2 인권교육 및 문화조성

■ 인권 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가칭)인권센터 설치
- 인권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정책방향)
- 인권교육 강사진 구축(정책방향)
- 충남 인권교육협의체 구성
 - 충남도청,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충남교육청, 충남인권센터, 각 시군별 인권교육 담당자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인권현황과 인권교육사례 등을 공유

[57]

04. 제도와 문화 조성



04_2 인권교육 및 문화조성

■ 공공과 시민영역의 균형있는 인권교육 강화

- 공공영역 인권교육
- 시민 인권교육 활성화
- 학교인권교육 지원
- 도내 시 군간 균형 있는 인권교육 실현

■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확산

- 시민사회 인권프로그램 지원
- 충남인권투어 프로그램 개발

[58]

04. 제도와 문화 조성



04_3 인권 협력체계 구축

■ 인권 협력체계 구축

- 도청(인권센터)-시군네트워크 구축(인권센터)
- 충남인권협의체 구성(인권센터)
 -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인권기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협의체 구성
- 인권단체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인권협의체 참여
 - 서울이 구성중인 9개 시도 인권협의체에 참여



[59]



충남인권심포지엄
인권으로 행복한 삶 : 지역사회와 인권

기초지자체의 인권증진 사례:수원시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인권과 만난 도시

박 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수원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 들어가며

1) 이 도시에는 누가 살고 있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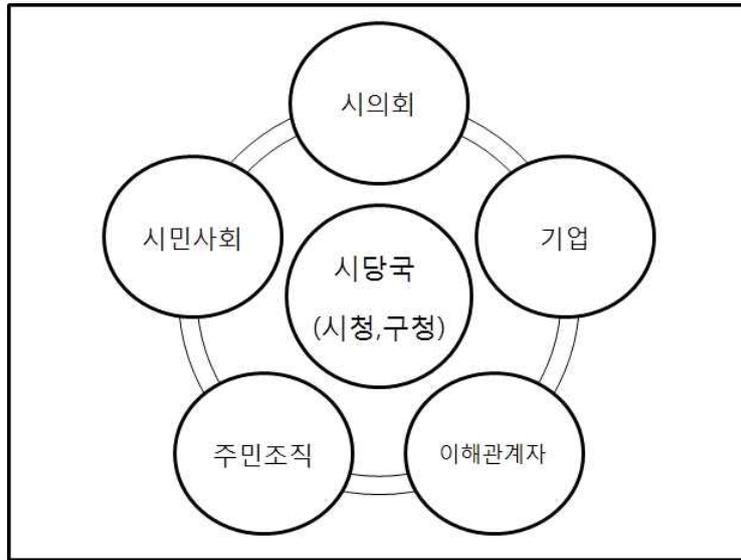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민은 누구이며, 참여하고 감시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가족, 친구, 동료, 연인. 그들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을 가진 성인이며 국적자이다. 그렇다면 함께 살고 있으나 또한 권리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공간, 도시는 어떤 의미인가. 이주민, 아동, 철거민, 도시빈민,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 빈곤 노인...

“타자로서의 응답 가능성을 상실한 삶을 아렌트는 ‘버려짐(Verlassenheit)이라고 부른다. 버려짐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자리=장소는 마련되어 있다’는 말은 해당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공적 공간이 암묵적으로 행사하는 배척의 힘은 버려짐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종 내면화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민주적 공공성 / 이토 준이치)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당시 프랑스에는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옛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파리 같은 대도시로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 이들이 거주할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그러자 프랑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파리 근교에 토지를 확보하고 서민들을 위한 대규모 임대 주택 단지를 건설했다. 그랑 앙상블이라고 불리는 이 대규모 임대 주택 단지는 프랑스의 기존 도시에서 보기 힘든 고층 아파트로 구성되었는데, 급하게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랑 앙상블은 주택 부족 상황에서 주택 문제로 고통 받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 건설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들을 도시와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배제시키고 공간적으로 격리시키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도시에 대한 권리 / 강현수) 그랑 앙상블의 슬럼화와 사회적 배제의 심화는 2005년 이민자 폭동으로 드러난다.

2) 대안으로 등장한 인권도시



인권도시의 주요 행위자와 역할
(2012한국인권회의의 ‘도시와 인권’ / 이성훈)

〈인권도시에 대한 우려〉

“인권도시운동은 거주민들의 ‘합성과 요구’에서 출발할수록 인권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음. 그러나 현재의 인권도시운동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의 합성과 요구를 듣고 있는지, 합성과 요구가 들릴 수 있는 자리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음. 이것이 불투명한 채로 ‘참여’만 강조할 때 ‘참여’는 차라리 배제의 다른 이름이 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의 주체와, 참여의 주체이면서 독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은연중에 구분되는 ‘참여’는 위험함.”(2012한국인권회의의 ‘도시와 인권’ / 미류)

2. 제도와 정책 추진시기

수원시는 2013년 2월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같은 해 7월 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그리고 11월 인권위원회 1기를 위촉했다. 공직자 등 인권교육을 진행했으며 시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 산하 기관과 위탁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진행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제도 및 시스템과 정책, 인권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항, 인권 인프라 구축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민관협력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2014년 5월부터 10월, 5개월간 인권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수행기관은 수원시정연구원이었으며 사회적 약자 중심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2015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16년 인권정책(계획·이행사항 모니터링)을 예정하고 있다. 3단계 사업 계획이 추진되는 중이다.

그 외 수원시는 초중고, 청소년, 다문화, 시민 등 협력 사업을 진행했으며 2015년 2월경 수원 시인권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3. 쟁점과 현안

1) 미술관 명칭을 통해서 본 공공성 문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이름 바꾸라”¹⁾
‘수원시민 미술관을 고민하는 사람들’ 기자회견 열고 성명 발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미술관 명칭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돼”

수원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수원 화성행궁 앞에 들어설 미술관의 이름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수원시민 미술관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수원 화성행궁 앞 미술관 공사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일부터 미술관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770여 명의 각계인사가 연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사이에 형성된 공공성〉

“우리의 삶의 위상이 복수이듯이, 공공성도 복수의 차원을 가진다. 우리가 하나의 삶/생명의 위상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듯이, 공공성도 어떤 하나의 차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욕구란 무엇인가에 대해 해석하고 공통의 세계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규범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고 자신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세계의 일부를 타자가 보여주기기를 기다린다. 우리 ‘사 이’에 형성되는 공공성은 그러한 몇 개의 차원에 걸쳐 있다. (민주적 공공성 / 이토준이치)

2) 경진여객 사태를 통해서 본 노동권과 집회시위자유, 버스 공공성

수원시청 화단공사, 그리 아름답지 않은 이유²⁾
다산인권센터 "화단·구조물 설치, 집회·시위 원천봉쇄"... 수원시 "환경미화"

경기 수원시가 최근 시청사 정문 앞 왼쪽 공간에 대형 화단과 구조물을 설치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환경미화라고 주장하지만 인권단체는 시민들의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의도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4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주말 오래전부터 사회적 약자와 시민단체들의 집회·시위 공간이었던 시청 정문 왼쪽 시청게시판 앞 일대에 대형 화단을 설치했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는 최근 철수한 해고노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농성에 이은 또 다른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1) 대안미디어 너머 2014. 12. 12.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

앞서 버스회사인 경진여객에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다 해고된 박아무개 노조위원장과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수원시청 정문 왼쪽 시정계시판 앞에서 "수원시가 경진여객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박 위원장 등은 농성을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도 마쳤다. 그러나 농성 첫날부터 수원시의 대응은 강경했다. 농성자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비닐천막을 설치하자 용역업체 직원과 공무원 수십여 명을 동원해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이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3) 강력사건과 안전, 그리고 인권

'오원춘 악몽' 재연...수원시 안심대책 마련³⁾

수원시는 5일 팔달산 등산로에서 토막시신이 발견돼 시민이 불안해하자 서둘러 시민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012년 4월 수원시 지동에서 발생한 중국동포 오원춘(당시 42)의 20대 여성 토막살해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관련부서 긴급회의를 소집,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안전관련 사업을 재점검하고 야간순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우범지역, 골목길, 공원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순찰을 시행하고 특히 사건이 발생한 팔달산 주변에 대해 야간순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수원시 전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이 큰 공원이나 뒷골목 등 취약지역 리스트를 작성, 특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화성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 등 야간 조명 시설도 즉각 점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강력사건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난을 엄벌하다〉

“톨레랑스 제로”의 파급으로 ‘시장주의-사회 보조 축소-형벌 확대’가 한데 몰려 있는 정책형태가 더 넓은 국제시장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규제 완화, 복지 예산 축소라는 ‘워싱턴 합의’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형벌국가라는 강철 주먹으로 포로노그래피성의 통제주의성의 열쇠를 쥐고 범죄 정책까지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2) 오마이뉴스 2014. 04. 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857

3) 중부일보 2014. 12. 05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0234>

4) 삼성 우수토고 물고기 집단 폐사와 시민 안전

수원 원천천 물고기 떼죽음..."삼성전자 원인 추정"⁴⁾

삼성전자, 방류 시작후 물고기 떠오르자 인력 투입해 급히 수거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하천 부근에서 31일 물고기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시 당국과 환경단체 등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하천에 서식하는 거의 모든 종의 어류가 몰살을 당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경악스러운 상황이다. 물고기 수만 마리가 폐사한 곳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천 삼성 중앙교 부근에서부터 하류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백년교 구간 사이에 집중 분포했다.

삼성 중앙교 하천에 연결돼 있는 삼성전자의 우수관(토고)를 기점으로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가 백년교까지 긴 고리를 형성했다. 삼성전자 토고는 세로 1.3m, 가로 1m 크기로 하천변 담장에 설치돼 있다. 환경단체는 물고기 폐사의 원인이 삼성전자 토고로부터 나온 방류수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이날 오전 8시 50분께 현장에 도착한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이오이 사무국장은 "현장에 도착해 백년교부터 훑고 올라갔는데 하천바닥에 치어부터 다 죽어있었다. 손바닥만한 물고기부터 말조개까지 다 떠올랐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원천천에 서식하는 붕어, 가물치, 메기, 미꾸라지, 말조개 등 모든 어종이 몰살을 당했다. 경악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죽어서 놀랐다"고 현장의 참혹함을 전했다. 물고기가 떼죽음이 시작됐던 시점은 삼성전자가 우수관을 통해 방류를 시작한 이날 오전부터라고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유엔글로벌컴팩트란? 글로벌 컴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전략을 글로벌 컴팩트의 10대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컴팩트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서,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의 수천여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업과 세계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한 기업은 세계적 원칙에 기반을 둔 기업전략 및 사회신념을 통해 세계 경제와 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정당하며 포괄적으로 번영하고 번성하도록 기여한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 무역과 투자는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기업은 착취적 관행, 부패, 소득 불평등, 혁신과 기업경영을 방해하는 장벽과 같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투명하고 건설적인 기업문화는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쌓으며 폭넓은 기반의 발전과 지속가능 시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유엔 글로벌 컴팩트 한국 협회(<http://www.unglobalcompact.kr/12.htm>)

4) 뉴스와이 2014. 10. 31

<http://www.mediawh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24>

4. 과제

1) 수원시 인권 정책의 과제

〈토대의 변화와 행정체계의 변화, 기획사업과 인권현안 대응 등의 박자가 잘 맞아야 함〉

- 수원시 공무원사회의 변화(인권 감수성 확대, 인권행정의 필요 공감대 형성)
-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확보
- 의사결정 과정의 민관 파트너십 관계 형성의 중요성
- 인권정책 홍보와 기획력있는 사업의 필요성

2) 현안과 쟁점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 아직 수원시 인권행정은 토대를 구축하는 시기
- 향후 참여한 인권현안과 만나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중요
- 현재까지 인권현안과 만났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음
- 지자체 등 행정에서 인권은 보편성 담론보다 구체적 쟁점의 모습일 가능성이 더 높음
- 시민참여, 기존 행정과의 조화

5. 나오며

인권도시의 경험은 아직 쌓이지 못했다. 인권 브랜드는 있으나 실질적인 인권행정의 구현은 요원한 일이다. 실제로 인권행정이 구현되고 시민들의 삶이 인권친화적이며, 도시 소수자들이 인권행정의 수혜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권담론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게 불화하는 인권현안을 통해서 등장할 것이다. 때로는 의지의 문제이고 때로는 구조의 문제, 때로는 감수성의 문제이며 많은 순간 인내와 논의, 민주주의의 실험으로 가능할 것이다.

〈별첨〉

수원시 인권제도 구축 및 정책 추진상황

□ 지방자치단체 조례·부서 설치현황

구 분	계	광역시 이상 (17)	기초 시·군·구 (226)	비 고 (미지정)
조례제정	64	14	50	179
위원회 설치	17	7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대전, 충남, 강원도)	10 (수원, 성북, 해운대구, 울산동구, 광주남구, 광명시 등)	
전담 부서설치	12	2 (서울, 광주)	10 (수원, 성북구·영등포·서대문 광주북구·남구·동구·북구·서구·광산구)	

□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① 인권기본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운영

- 2013. 2. 15 : 인권전담부서 설치(안전기획조정실 미래비전과 인권팀)
- 2013. 7. 31 : 수원시인권기본조례 공포(제3236호)
- 2013. 9. 3 :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촉 자문단 회의(3차)
- 2013. 11.13 : 수원시 인권위원회(제1기) 위촉
- 2014. 8. 25 : 수원시 인권위원회(결원) 위촉/ 박순영, 김은수 의원

② 인권위원회 운영

계	정기회	임사회	소위원회	소통회의	세미나
18회	3	4	3	7	1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회의) : 정기회/ 4회, 임시회/ 필요시

- 주요 활동내용
 - 수원시 인권제도 및 시스템 정책
 -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관련 사항
 - 수원시 인권 인프라 구축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수원시 민·관 협력 인권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공공부문 및 인권관련 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 공직자 인권감수성 교육(수요 인권교실) : 15회 835명
- 수원시의회 의원·사무국직원 인권교육(2014.2.7./해운대의정연수) : 1회 58명
- 찾아가는 인권교육(영통복지관, 산하단체, 요양원 등) : 11회 636명
- ※ 2014. 11월~12월 : 복지관, 비전업청소년학교, 요양원 종사자 교육 16회 350명 추진 중

④ 인권증진 민·관 협력사업

- 사업기간 : 2014. 6월 ~ 12월
- 사업분야 : 인권교육 및 증진사업
- 사업선정 : 6개 사업(초·중학교, 청소년, 다문화, 시민 등)
- 주요내용 : 계층별 맞춤형 인권교육, 장애인당사자 인권강사양성, 전시회 등
- 사업비 : 29백만원(1개사업당 5백만원 이내)
- ※ 초·중고 학교 인권교육

⑤ 인권실태조사 추진

- ▶ 1단계(2014년) : 인권실태조사 연구 용역
- ▶ 2단계(2015년) : 인권기본계획 수립
- ▶ 3단계(2016년) : 인권정책(계획·이행사항 모니터링)

【사업개요】

- 용역명 :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4. 5. 12. ~ 10. 11. (5개월간)
 - 수행기관 : (재)수원시정연구원
 - 과업범위 : 사회적 약자 중심(5개분야 :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북한이탈주민)
 - 수원시 인권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 시민의 인권의식 및 인권실태 조사(시민 500명, 공무원 500명)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실태 조사(FGI 105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12~2016) 우리시 도입과제 제시
 -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수원시 비전과 방향 제시
 - 사업비 : 50,000천원(계약 49,500천원)
- ※ 인권자문단 별도 구성(시정연구원), TF팀 구성(시 관련부서팀장)

【추진상황】

- 2014. 5.12 :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계약(수원시정연구원)
- 2014. 5.29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제1부시장 주재)
- 2014. 6.19 : 실무TF팀 회의개최(관련업무 팀장 24명)
- 2014. 9. 1 : 중간보고회 개최
- 2014.10. 2 : 최종보고회 개최
- 2014.10.12 : 연구용역 완료

【향후계획】

-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2015. 3 ~5월(범위:2016~2018/3년)

⑥ 수원시인권센터 개소 준비

【센터운영 개요】

- 개소시기 : 2015. 2월
- 센터형태 : 직영체계(미래비전과 인권팀)
- 센터장소 : 수원시 별관 7층(보육아동과 옆 유휴 공간/ 10평 규모)
- 센터명 : 수원시인권센터/시청사 내
- 소요인원 : 전문 상담·조사관 2명 보강(일반임기제 공무원)

구분	계	일반직 공무원				임기·시간제 공무원		
		소계	6급	7급	8·9급	소계	6급	7급
현재	3	3	1	1	1	-	-	-
변경	5	3	1	1	1	2	1	1

【추진상황】

- 2014. 9. 5 : 수원시인권센터설치·운영 방침결재(시장님)
- 2014. 9.11 : 관련부서(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회계과)협조요청 공문발송
- 2014.10.12. : 자치행정과(조직팀)과 협의
⇒ 조직진단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추진(2014. 12월 초)/채용소요 기간 약2개월 소요

【향후계획】

- 2014. 12월 :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센터운영관련 사항)
- 2014. 12월 : 인권센터개소 준비(사무실·상담실 설치)
- 2015. 2월 : 인권센터개소 및 인권관련 상담 언론 홍보강화